(3) 결산상 세입·세출 처리상황

(단위:원)

구 분	예산현액 ㉮	결산						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							
		세입㉯	㉯/㉮	세출㉰	㉰/㉮	결산상 잉여금 ㉱=(㉯-㉰)	㉱/㉮	다음연도 이월액				보조금 실제반납금㉲		현 년 도 채무상환 ㉳	순세계 잉여금 ㉴=㉱-㉲-㉲-㉳
								계 ㉲=①+②+③	명시이월 ①	사고이월 ②	계속비이월③	보조금반납금	교부차액		
합 계	836,904,135,080	846,270,103,700	101 %	681,697,740,536	81 %	164,572,363,164	20 %	126,253,095,017 (861,200,000)	26,415,763,929	59,563,045,304	40,274,285,784 (861,200,000)	4,795,545,540	8,814,700		33,514,907,907
일 반 회 계	800,994,483,730	809,047,010,257	101 %	656,572,671,219	82 %	152,474,339,038	19 %	116,268,702,397 (861,200,000)	22,909,771,929	55,015,956,684	38,342,973,784 (861,200,000)	4,765,348,879	8,814,700		31,431,473,062
특 별 회 계	35,909,651,350	37,223,093,443	104 %	25,125,069,317	70 %	12,098,024,126	34 %	9,984,392,620	3,505,992,000	4,547,088,620	1,931,312,000	30,196,661			2,083,434,845
공기업특별회계	20,500,523,710	20,431,847,256	100 %	12,472,281,615	61 %	7,959,565,641	39 %	7,763,899,300	3,505,992,000	4,257,907,300					195,666,341
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	20,500,523,710	20,431,847,256	100 %	12,472,281,615	61 %	7,959,565,641	39 %	7,763,899,300	3,505,992,000	4,257,907,300					195,666,341
기타특별회계	15,409,127,640	16,791,246,187	109 %	12,652,787,702	82 %	4,138,458,485	27 %	2,220,493,320		289,181,320	1,931,312,000	30,196,661			1,887,768,504
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	51,199,000	65,132,229	127 %	35,000,000	68 %	30,132,229	59 %								30,132,229
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	223,925,000	240,597,515	107 %	156,274,000	70 %	84,323,515	38 %								84,323,515
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	904,549,000	895,666,160	99 %	869,231,002	96 %	26,435,158	3 %								26,435,158
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	856,754,000	973,773,275	114 %	684,154,590	80 %	289,618,685	34 %								289,618,685
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	2,288,867,270	2,224,147,420	97 %	172,145,840	8 %	2,052,001,580	90 %	1,931,312,000			1,931,312,000				120,689,580
수질개선 특별회계	9,260,513,370	9,264,051,048	100 %	8,912,662,270	96 %	351,388,778	4 %	289,181,320		289,181,320		30,196,661			32,010,797
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	1,823,320,000	3,127,878,540	172 %	1,823,320,000	100 %	1,304,558,540	72 %								1,304,558,540

※ 1. 현년도 채무상환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(명시이월, 사고이월, 계속비이월), 보조금반납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하여야 함
2. 다음연도 이월액(명시이월,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)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, 자금없는 이월액은 ( )로 별도 표시